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호경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등의 위임사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“생물다양성법”이라 한다)」 상에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생태·경관 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(안 명칭)

－ (기 존)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

→ (변 경)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

나. 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”에 관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
(안 제1조 및 제2조)

다.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(안 제3조)

라.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(안 제5조)

마. 종전의 조항들을 변경함(제3조→안 제4조, 제4조→안 제6조, 제5조→안 제7조, 제6조→안 제8조, 제7조→안 제9조, 제8조~제33조→안 제10조~안 제35조)

바.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(안 제6조, 안 제9조, 안 제24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습지보전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뿐만 아니라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,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,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조례 제명과 전반적인 조문을 적합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가. 주요 내용 검토

- 현행 조례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자치법규 입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< 입 법 평 가 >	
중 합 의 견	• 해당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의 수립여부 파악이 필요하며 특히 정기적인 검토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 이에 담당자 및 도민의 이해도를 확보하고자 조례 명칭 변경을 제안하며,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나 일부 혼란방지를 위해 상위법 추가 및 본칙 수정·추가를 권고함. - 목적 규정에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추가 -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→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- 제2장 생태·경관보전지역 관리 → 제2장 생태·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- 제6장 보칙 → 제6장 생물다양성 보전, 제7장 보칙 - 상위법 재기재 조항 수정 :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 •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규칙 제정 권고 필요 (조례 제8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22조제5항, 제8조제2항, 제33조)
평가결과	☐ 현행유지 ☐ 일반정비 ☒ 개정권고 ☐ 통합권고 ☐ 폐지권고 ☐ 기타

- 안 제2조에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
- 안 제3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충청북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문을 신설함
- 안 제5조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수립(5년 단위)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고, 조례안 예고(’ 25. 4. 15.~2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과 도지사의 책무 및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규정하였고, 용어 정비 등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,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도민 이해도를 제고하였다고 사료됨.
- 또한, 충청북도의 자연환경과 생태·경관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도 부합되기에 향후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실행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, 집행부 협의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